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허1574 거절결정(상)
원 고 외국회사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6. 2. 3. 2014원764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 사후지정일: 제1062202호/ 2013. 7. 23.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 제35류의 Business advice in the nature of franchising services, namely, offering technical assistance in the establishment and/or operation of real estate brokerage firms.

상품류구분 제36류의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s.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5. 7.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가 네덜란드 국기()와 매우 유사한 도형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1. 13.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거절결정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1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4원7648호로 심리한 다음, 2016. 2.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네덜란드 국기와 동일·유사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와 같이 열기구가 배치되어 있어 네덜란드 국기와는 전체적인 외관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네덜란드 국기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들이 네덜란드 국기와 연관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위로부터 적색, 백색, 청색의 3색으로 된 직

사각형 좌상부에 열기구를 결합하여 구성된 도형상표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네덜란드 국기()처럼 색채의 배열이 적색, 백색, 청색으로 되어있고, 다만 작게 표시된 열기구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네덜란드 국기처럼 적색, 백색, 청색으로 된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점, 전체 외곽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4:3 정도인 점 등에서 공통되고, 이러한 공통점과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열기구 모양의 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열기구의 색채 배열도 적색, 백색, 청색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네덜란드 국기와 유사하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네덜란드 국기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거

절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김부한

 판사 나상훈